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필레 의원)

의안 번호	16-11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. 1. 21.

발의자 : 이필레·강희향·김윤정

백남환·송병길·이동주

이봉수·전승학·허정행(9명)

## 1. 제정이유

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마포아트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규정 신설 (안 제13조의 3)

## 3. 관계법령

노인복지법 제26조 (경로우대)

## 4. 예산조치 : 필요

가. 소요예산 : 65세 이상 이용료 할인율에 따른 추계

20%할인 시	30%할인 시	50%할인 시
약 40,000천원	약 60,000천원	약 96,000천원

나. 산출기준 : 191,081천원(65세 이상 2015년 수입액) × 할인율

## 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6. 1. 25. ~ 2016. 1. 29.(의견제출 없음)

나. 불임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의3(할인) ① 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, 각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3조의3(할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</u></p>